

수원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합143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환

피고 1.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장동춘

변론 종결 2023. 3. 22.

판결 선고 2023. 5.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E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99,280,400원, 원고 B에게

189,858,633원, 원고 C에게 372,691,195원, 원고 D에게 16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F와 망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은 1,329,830,268원¹⁾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F은 원고 A에게 599,280,440원, 원고 B에게 189,858,633원, 원고 C에게 372,691,195원, 원고 D에게 16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2020. 10.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상당 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해 왔다. 원고들 및 망인의 명의로 2019. 7. 15.자 차용증서(갑 제1 내지 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망인	2019. 7. 15.	611,961,390원	2019. 12. 31.	2019. 7. 15.-2019. 12. 31.: 연 5% 2020. 1. 1.-2020. 12. 31.: 연 15% 2021. 1. 1.~변제 완료일: 연 20%
2	원고 B		298,981,835원			
3	원고 C	372,691,195원				
4	원고 D	168,000,000원				

나. 망인은 2019. 7.경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및 분양,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피고 F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아래와 같이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9.

8. 21. 이 사건 건물(총 37개 호실)을 거래가액 5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날인 2019. 8. 22.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2조 [망인의 피고 F에 대한 채무내용과 그 변제방법]

① 망인은 피고 F로부터 피고 F의 망인에 대한 송금내역 명세서에 따른 1,662,78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그 차용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② 망인은 제1항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서에 기재된 부동산을 피고 F에게 양도하고, 피고 F은 망인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H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34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원리금 전액 포함)를 승계 및 인수한다.

다. 망인은 2020. 10.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E과 자녀인 I, J가 있었다. I과 J는 2020. 12. 23. 수원가정법원 2020느단2004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1. 3. 10.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E은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 2020느단200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1. 3. 10.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망인에게 합계 1,329,830,268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단독상속인 피고 E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위 1,329,830,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은 2019. 8. 21.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F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1,329,830,2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위 1,329,830,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서증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서는 사본이고 이를 원본으로 대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이의가 있으며, 원고들은 원본이 망인에게 있었으나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고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원본으로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한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인영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 명의 부분 인영은 망인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날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여기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서와 갑 제1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망인에게 대여금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망인 측과 주고받은 금전거래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들도 이 사건 차용증서의 '용도·목적'란에 대여금과 무관한 명목이 기재된 금전들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들이 망인 측에 입금할 때 입력한 간단한 출금기록사항의 내용만으로는 그 입금액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 등 다른 명목의 돈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들이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입장에서 본 망인에 대한 대여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금전거래는 대여가 아니거나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A, B, C의 경우 망인에 대한 총 채권액에서 투자수익채권액을 공제하면 대여금채권액이 남아 있지 않다.

원고들은 위 인영감정촉탁 결과가 나오자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금전거래까지 포함하여 망인에 대한 대여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대여금 내역과도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석

판사조민식

판사신지원

별지

1) 원고는 2023.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이 변경신청서에 1,329,830,228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599,280,440원, 189,858,633원, 372,691,195원 및 168,000,000원을 합하면 1,329,830,268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1,329,830,228원은 계산상 착오기재로 보인다.